

기계설비 · 가스공사업

■ 업무내용

- **기계설비공사** : 건축물 · 플랜트 그 밖의 공작물에 급배수 · 위생 · 냉난방 · 공기조화 · 기계기구 · 배관설비 등을 조립 · 설치하는 공사
- **가스시설공사 제1종** : 가) 가스시설시설공사(제2종)의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공사
 - 나) 도시가스공급시설의 설치 · 변경공사
 - 다)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시설 · 집단공급시설 · 저장소시설의 설치 · 변경공사
 - 라) 도시가스시설 중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설치 · 변경공사
 - 마) 저장능력 500kg 이상의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의 설치 · 변경공사
 - 바) 고압가스배관의 설치 · 변경공사

■ 등록기준

1. 자본금

법인	개인
1.5억원 이상	1.5억원 이상

2. 공제조합

2025.05.13 기준

업종	1좌당	자본금	CC등급 이상	C등급
기계설비 · 가스공사업	1,160,000원	1.5억원	41좌 (47,560,000 원)	45좌 (52,200,000 원)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동일				

3. 기술능력

기계설비공사 <p>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이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건축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또는 나)에 따른 기술자격취득자 [기계설비법 시행령 별표2 제1호 가목1)부터 4)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를 1명 이상 포함해야 한다.</p> <p>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건축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p>	가스시설공사 (제1종) <p>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가스산업기사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로서 가스관계업무에 종사한 실무경력이 5년 (실무경력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을 취득하기 전과 취득한 후의 경력을 모두 포함한다) 이상인 사람 1명 이상</p> <p>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 (1)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용접산업기사 또는 가스기능사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p> <p>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용접기능사 · 특수 용접기능사 또는 배관기능사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 (2) 가스관계업무에 종사한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이고,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실시하는 가스시설시공관리자 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p>
---	--

★기계설비공사

기술사	기계, 건설기계, 건축기계설비, 공조냉동기계, 산업기계설비, 용접, 금속재료, 건축전기설비, 건축구조, 건축시공, 가스, 소음진동
기능장	배관, 기계정비, 판금제관, 용접, 금속재료, 위험물, 전기, 건축일반시공, 에너지관리, 가스
기사	일반기계, 건설기계설비, 건축설비, 공조냉동기계, 설비보전, 메카트로닉스, 용접, 금속재료, 전기, 전기공사, 건축, 에너지관리,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가스, 소음진동
산업기사	배관, 기계조립, 기계설계, 건설기계설비, 건축설비, 공조냉동기계, 정밀측정, 기계정비, 생산자동화, 판금제관, 용접, 금속재료, 위험물, 전기, 전기공사, 건축, 건축일반시공, 건축제도, 온수온돌, 에너지관리,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가스, 소음진동
기능사	배관, 기계가공조립, 전산응용기계제도, 공조냉동기계, 설비보전, 정밀측정, 기계정비, 생산자동화, 판금제관, 피복아크용접, 특수용접, 가스팅스텐아크용접, 이산화탄소가스아크용접, 금속재료시험, 위험물, 전기, 전산응용건축제도, 온수온돌, 에너지관리,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가스
기능사보	건축배관, 공업배관, 다듬질, 일반판금, 타출판금, 제관, 특수용접, 가스용접, 전기용접, 내선공사, 외선공사, 온수온돌, 구들온돌, 가스

※ 기술인력은 상시 근무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상시근무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하는 사람을 말한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그 자격이 정지된 사람과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라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건설기술인은 제외한다.

★ 기계설비법에 따른 기계설비기술자 산업기사 이상

기술사	건축기계설비, 기계, 건설기계, 공조냉동기계, 산업기계, 설비, 용접, 소음진동
기능장	배관, 에너지관리, 판금제관, 용접
기사	일반기계, 건축설비, 건설기계설비, 공조냉동기계, 설비보전, 메카트로닉스, 용접, 소음진동, 에너지관리,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산업기사	건축설비, 배관, 정밀측정, 건설기계설비, 공조냉동기계, 생산자동화, 판금제관, 용접, 소음진동, 에너지관리,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가스시설공사1종

기술사	가스,용접
기능장	가스,용접,배관
기사	가스,용접
산업기사	가스,용접,배관
기능사	가스,전기용접,배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분야 건설기술인 (초급, 중급, 고급, 특급)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실시하는 가스시설시공관리자 양성교육을 이수한자 (가스시설시공관리자)	

※가스시설시공업(제1종)에는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인정기능사, 한국열관리시공협회 양성교육이수자는 인정되지 않음

4. 시설 · 장비

사무실
사무실은 「건축법」등 그 밖의 법령에 적합한 건물이어야 하며, 등록을 하려는 시·도 안에 있어야 한다
※ 단독주택, 공동주택 등 주거용건물 등 상시적으로 사무실로 이용하기 부적합한 건물 등록 불가
장비
<p>■ 가스시설공사 (제1종)</p> <ul style="list-style-type: none">① 기밀시험설비② 내압시험설비③ 자기압력기록계④ 가스누출검지기⑤ 공기호흡기 또는 공기를 내보내는 마스크⑥ 블트 및 암페어미터(전류계)⑦ 절연저항측정기(500V 1천MΩ까지 측정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그 밖의 측정기 (아들자캘리퍼스, 내외경마이크로미터, 초음파측정기, 다이얼게이지, 도막측정기 등)⑧ 각종 압력계⑨ 표준이 되는 온도계 <p>위 장비는 자기소유로 등록한 것이어야 하고, 위의 장비 중 「철도안전법」 제26조에 따른 형식승인, 같은 법 제38조의12에 따른 정밀안전진단,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검사 또는 「선박안전법」 제7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검사의 대상이 되는 장비는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형식승인, 정밀안전진단 또는 검사를 마친 장비어야 한다.</p>

신규등록 소요기간

평균 30~45일 이내 소요